

2007년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제도

2007부터 입양휴가제·국내입양 우선추진 제 도입, 입양수수료·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와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입양휴가제』를 올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입양휴가제』를 2007년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휴가기간 : 2주)하기로 하였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행정자치부)
- 독신자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50 → 60세 미만)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 이내) 제한규정 등도 없앨 계획이다.

-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문의 : 아동복지팀 031-440-9650~3)

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 결정

지난 12. 1(금)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를 감안

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가입자, 공급자, 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개선 ②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수가(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하여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엔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200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

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험정책팀 02-2110-6356 / 보험급여 기획팀 02-2110-6486)

2007년 최저생계비 2인가구 73만원, 4인가구 12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였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35천원이며, 2인가구 734천원, 4인가구 1,205천원 등이다. 이는 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저생계비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올해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72천원, 2인가구 628천원, 4인가구 1,031천원 등으로 지난해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되었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세금 관련 체크포인트

태권도, 학습지 교육비 공제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태권도, 수영, 골프 등의 체육 학원 교육비도 소득 공제 혜택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 시설, 피아노나 미술 등의 학원이 공제 대상이었다. 학원 조건도 까다로워 하루 3시간 주 5회 이상의 교육을 받을 때만 해당이 돼서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을 받는 경우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학습지 교육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약, 치아교정도 소득공제

가족 보약이나 아이의 치아를 교정해 줄 예정이라면 반가운 소식.

새로운 세제가 적용될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치아 교정, 쌍꺼풀, 모발 이식 등의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 비용과 보약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될 예정이다. 2008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세금우대 혜택 축소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상호 부금, 적립식 펀드 등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은 1월 신규 가

입분부터 이자 소득에 대해 세율 9%로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의 한도가 현재 4천만원에서 절반인 2천만원으로 축소된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 상품이라도 15.4%의 정상 세율이 적용되고, 2009년부터는 아예 세금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

공제 많은 체크카드

앞으로 체크·직불 카드를 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5%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 고가 물건 구입과 같이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체크·직불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직불 카드보다는 체크 카드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 은행 잔고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체크 카드가 24시간 내내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의 수도 많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정 세금혜택 많아져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논란이 많다.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 외에 50만~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이 줄게 될 예정. 반면 독신자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소수자 추

가 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행에 비해 가구당 연간 7만~26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게 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혼례, 장례 등 나이제한 없애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거주하는 식구의 혼인과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 혜택을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나이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거나, 남녀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사유가 있을 때 1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농·수협 이자 비과세 한도 축소

1인당 2천만원에 한해 이자 소득세가 면제 되어 인기를 누리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조합 예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들 예정. 대신 1천~2천만원의 금액에는 2009년까지 5%의 이자 소득세를 댈다.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에 따른 개편으로 2007년 1월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속

지난해까지만 판매할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까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직장인의 경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

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 필수 상품. 단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세율이 현행 9~36%에서 2007년 1월부터 50%로 확대된다. 또한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적용률 70%에서 80%로 변경된다.

주택법 관련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후분양제 확대

공공택지내 공공분양 아파트는 40% 공정 후 분양, 서울시 공급 아파트 80% 공정 후 분양이 가능해진다. 卍